

제319회 임시회

2013. 4. 16(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문희 의원 외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3년 4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4월 9일

3. 제안이유

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타기관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나. 군입대,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서 제외토록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선발기준 완화 (안 제4조)

나.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단서조항 신설 (안 제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현재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액이 대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 군입대와 부상,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모범대원의 자녀 및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의 학업 장려를 위해 등록금 지급중단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장학금은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보조하기 위해 설치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입법예고(13. 3. 12. ~ 4. 1.)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